가르칠 맛 나는 학교!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

고3 교실, 이대로 두시겠습니까?

18세 학교안 선거운동·정치활동 허용 등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확보 및 우려점 해소 위한 교육적 노력 필요

학교가 정치적 갈등에 휘둘리거나 정당의 프로파간다 장이 되는 것은 막아야
학교·교실안만이라도 파당적 논쟁 방지, 여타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

무엇이 바뀌는가? / 선거법 개정 전후의 변화

	개정 전	개정 후	변화
선거 연령	19세(대학생)	18세(고3 학생)	투표 가능
선거운동 불가	미성년자 (19세 미만의 자)	미성년자 (18세 미만의 자)	학교 내외에서의 선거운동 가능
정당 가입	당원 불가	당원 가능	정당 당원자격 부여

선거법 개정 전후 준비사항 : 한국 vs 일본

한국 – 4개월
- 2019. 12. 27 선거법 개정
- 2020. 4. 15 제21대 총선 (고교생 첫 선거)

일본 – 13개월
- 2015. 6. 17 공직선거법 개정
- 2015. 9. 29 문부과학성 학생용/교사용 자료 HP 게재
- 2015. 10. 29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발표
- 2016. 7. 10 참의원 선거(고교생 첫 선거)

■ 한국 : 선거교육 등 가능 시간 – 한달 남짓
- 법 통과이후 바로 적용
- 선거법 개정 이후, 선거가이드라인 및 선거교육 준비 착수 발표(19. 12. 31)
  : 교육부 – 시 · 도교육청 담당자 첫 협의(20. 1. 6) 시작, 선거교육 자료집 개발, 발간 예정(20. 2월 말) 발표 예정
  :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, 1학기 시작 전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

■ 일본 : 선거교육 등 가능 시간 –10개월
- 법 통과이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 설정
- 총무성(한국의 행정안전부)과 협력, 학생용 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(약 3개월 준비), 선거법 위반 방지 등 선거교육 실시(약 10개월)
- 문부과학성(한국의 교육부)은 고교생 정치활동 ·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발표(약 4개월 준비)

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?

교실교육의 객관성 ·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선거 교육 · 학생 정치활동 등에 대한 〈학생용 · 교사용 부교재 및 학생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〉 배포 필요

일본 문부과학성 지침 예시

선거 교육	고교생 정치활동
● 학습지도요령에 기초, 교장 중심으로 학교차원에서 총괄적 · 계획적 지도계획 실시 필요 ● 다양한 시각 · 의견이 가능한 사안을 다룰 경우, 여러 가지 견해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중요 ● 교원은 개인적 주장을 피하고,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학생을 지도함. ● 지도 전체가 특정한 정치사상 지지 · 반대해서는 안되며,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안 됨.	● 학교의 교육활동으로서 학생이 정치활동 등을 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4조 3항에 의거 금지 필요 ● 교내에서는 수업중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● 방과 후나 휴일 등이라도 학교 내에서는 학교시설물 관리 지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· 금지 필요 ● 방과 후나 휴일 등의 학교 밖 정치활동도 수업이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, 이에 따른 해당학생이나 다른 학생의 학업 등에 대한 지장을 주는 상황에 대응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 · 금지 등 적절한 지도 실시

■ 학부모 ·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

– 일본의 경우, 문부과학성이 교육청 · 학교에 △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따른 학교대응 요청, △부교재 설명 · 전파 등 대비활동 전개

■ 고교생 유권자 보호방안 마련

–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고3 학생에게는 권리에 따른 의무 · 책임이 발생함. 즉, 공직선거법 위반 시 해당 학생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.

– 복잡하고 사례별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학생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든, 외부의 권유 등 상관없이 행위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학생 보호방안 마련이 먼저였으나 교육부 준비는 전무함.

공직선거법 중 문제발생 예상 규정

구분	규율 내용	선거법 위반 가능성
제58조 의2	●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하나 △호별 방문, △사전투표소, 투표서 100m 이내, △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· 추천, 반대 내용 포함, △현수막 등 시설물, 인쇄물, 확성장치 · 녹음기 · 녹화기, 어깨띠 등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함.	● 금지대상 행위가 아닌 한 활동이 가능함. ● 학교 교실은 개별 학급단위 공개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. ● 교실을 공개된 장소로 간주한다면 교실 내 투표 독려행위는 가능함.
제80조 (제106조)	● 연설금지 장소는 △국가 · 지자체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(단,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 배제), △운송수단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, △병원 · 진료소 · 도서관 · 연구소 등이 포함.	● 학교는 '공개장소'로 구별됨으로써 연설 · 대담이 가능한 장소임. ● '공개장소'에서의 연설 · 대담 시에는 후보자들이 자동차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발생
제87조	● 동창회 · 산악회 등 사적 모임,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단체 등은 단체명의 선거운동이 제한됨.	● 고3학생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학생 일부가 학교 혹은 동아리 이름을 내걸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비판 한다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음.
제108조	● 선거 6일전(2020. 4. 9)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●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,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 금지	● 학교 모의투표 혹은 인기투표도 해당됨. SNS 활용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칫 그 결과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한다면 선거법 위반임.
제108조 의3	● 언론기관 · 단체 등이 정책 · 공약에 대한 △순위 · 등급 등 서열화 행위, △특정 후보자에 유리 · 불리하게 평가단 구성 · 운영 행위 등은 금지됨.	● 학생들이 학교 · 동아리 단체명을 밝혀 후보자 정책 · 공약에 순위나 등급을 매겨 SNS에 공유한다면 선거법 위반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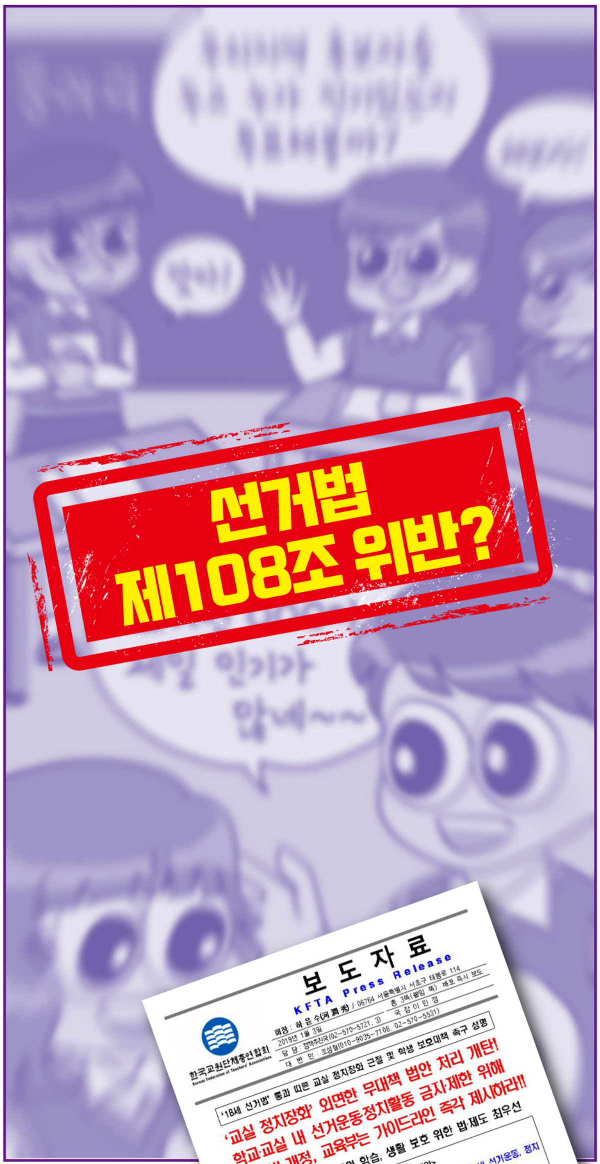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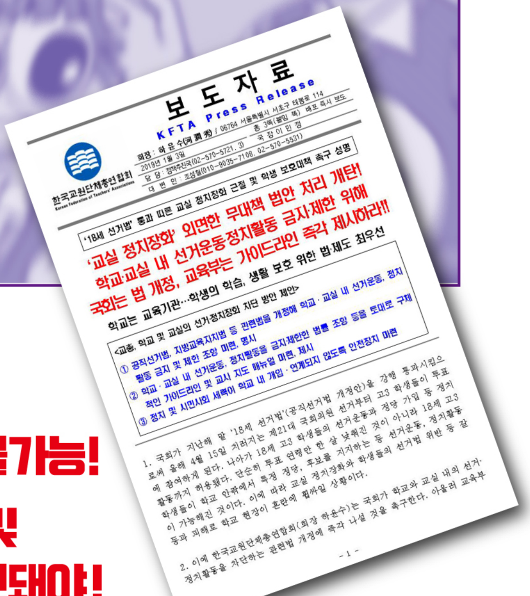

보 도 자 료
KFTA Press Release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' Associations

회장 : 하 윤 수(河潤秀) /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
2019년 1월 3일 / 총 3쪽(붙임 쪽) 배포 즉시 보도
담 당 : 정책추진국(02-570-5721, 3) / 국 장 이 민 정
대 변 인 : 조성철(010-9035-7108, 02-570-5531)

'18세 선거법' 통과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대책 촉구 성명

'교실 정치장화' 외면한 무대책 법안 처리 개탄!
학교·교실 내 선거운동·정치활동 금지·제한 위해
국회는 법 개정,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즉각 제시하라!!

학교는 교육기관…학생의 학습, 생활 보호 위한 법·제도 최우선

<교총, 학교 및 교실의 선거·정치장화 차단 방안 제안>
① 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·교실 내 선거운동,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 마련, 명시
② 학교·교실 내 선거운동, 정치활동을 금지·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 마련, 제시
③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·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

1. 국회가 지난해 말 '18세 선거법'(공직선거법 개정안)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. 나아가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.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,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,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.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다.

2.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하윤수)는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·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. 아울러 교육부

- 1 -

한국교총 요구사항

: 법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권리 제약 불가능!

: 조속한 법 개정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절대적으로 우선돼야!

- 만 18세 선거로 선거운동·정당가입 허용되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**학교 안에서는 선거운동 등 제한 필요**
- 정당 등이 학생들에게 **정책 홍보나 정당 가입을 목적으로 교실을 찾아다니는 행위가 없도록** 정당법 제37조 제2항 조속 개정 필요

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총

모바일 회원가입 바로가기

회원 가입 문의 02)570-5541~4

• 교육·교원정책 02)570-5711~4
• 교권·교직상담 02)570-5611,3,5